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41
----------	------

2018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2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장의 '서울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의 하나인 민감군 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용어 정리를 통해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안 제2조)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
-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를 마련하고, 발령·해제기준 및 조치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별표 4)
- 예보 및 정보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추가 및 변경(안 별표 1 ~ 별표 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8. 1. 4. ~ 1. 24.)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서울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의 하나인 민감군 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1) 대기오염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 및 민감군 주의보 추가(안 제 2조, 제8조의2 및 별표)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현재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시 행동요령은 민감군과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오존의 경우 일사량이 높은 시간대에 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출 빈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를 별도의 취약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행 민감군의 대상을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로 확대 정의하는 것은 민감군 분류 취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행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에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초미세먼지 (PM-2.5)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정비(안 별표 1 ~ 별표 4)

- 오존 예보에 취약군을 별도 분류, 대기오염 민감군 대상을 재정의, 초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규정함에 따라 별표의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정비하고(안 별표 1 ~ 별표 3)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농도기준과 조치사항을 신설(안 별표 4)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법무담당관 규제심사 결과에서도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참 고 사 항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중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령기준 : WHO 잠정목표기준 1단계인 $75\mu\text{g}/\text{m}^3$ 이상 ▶ 시행시기 : '17. 7월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전파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경보 알리미' ARS(전화)로 신청, 예경보 동시다발식 신속정보 제공(30분→7분)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평균 WHO 잠정목표 2단계 → 3단계 수준으로 조정 ⇒ 일평균 PM-10($100\mu\text{g}/\text{m}^3 \rightarrow 75\mu\text{g}/\text{m}^3$), PM-2.5($50\mu\text{g}/\text{m}^3 \rightarrow 35\mu\text{g}/\text{m}^3$)

1 발령기준 및 행동요령(PM-2.5)

구 분	민감군 행동요령
민감군 주의보 ($75\mu\text{g}/\text{m}^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활동 자제 •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조정
주의보 ($90\mu\text{g}/\text{m}^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활동 제한 •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경보 ($180\mu\text{g}/\text{m}^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활동 금지 •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 학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시간 평균농도가 2시간 지속될 경우 민감군 주의보, 주의보, 경보기준에 따라 발령

2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에 대한 전파체계 강화

- '예·경보 알리미 ARS(전화)' 신청 확대로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전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ARS' 국내 최초 도입
 - 병원 및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신청 유도
- 예·경보 및 정보 전파체계 개선(자동경보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 순차적 전달 방식에서 동시다발식 신속 정보 제공(30분→7분, '17.8월)
 - 계층별, 단계별 전파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제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mu 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mu m$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

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감군 주의보) ① 시장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농도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도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 및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조치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mu\text{g}/\text{m}^3$)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상 물질	미세먼지 (PM-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 ~ 15	16 ~ 50	51 ~ 100	10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비고>

-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나. 오존

(단위 : ppm)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상 물질	오존 (O ₃)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 으로 대체	·가급적 실내활동
	취약군	-	-	·일사량이 높은 14시~ 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근무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6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 제8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p>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p> <p>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p> <p>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할 실외활동 자제 홍보</p> <p>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p> <p>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p> <p>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p> <p>다. 노천 소각금지</p> <p>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경보	<p>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p> <p>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p> <p>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p> <p>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할 실외활동 금지 홍보</p> <p>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p> <p>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p> <p>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p> <p>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중대경보	<p>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p> <p>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p> <p>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p> <p>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p> <p>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p> <p>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p> <p>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별표 4]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제8조의2 관련)

가. 미세먼지(PM-2.5) 농도기준

대상 물질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민감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비고>

-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의 권역별 농도가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나. 조치사항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나.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권고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주·정차시 공회전 자제 권장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₃)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PM-10)”란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4. “미세먼지(PM-2.5)”란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5. “오존(O₃)”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오존(O₃) 농도”란 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

한다.

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생략)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민감군 주의보) ① 시장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농도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도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 및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조치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

----- 범위-----
-----.